대한비과학회 학술위원회 규정

(2006. 9. 27. 초안)
(2006. 10. 13. 보안)
(2011. 3. 13. 제정)
(2014. 3. 9. 개정)

제1조(명칭) 본회는 대한비과학회 학술위원회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회는 대한비과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제반 학술업무의 관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업무)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1. 학술대회의 학술업무 기획 및 실행
2. 대한비과학회 학술상 관리 및 수상자 선발
3. 대한이비인후과학회(수정), 분과 학회 및 대한비과학회 연구분과와 학술활동 협조
4. 기타 학술진흥과 학술교류

제4조(구성) ① 본회는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학술이사가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② 학술이사는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,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.
③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임명할 수 있다.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 본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.
② 정기회의는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 이전에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학술이사가 필요 시 소집한다.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제6조 (삭제) <2014.3.9>

제7조(재정) 본회의 회의 시 소요되는 경비는 학회에서 부담한다.

제8조(기타)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비과학회 회칙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.
② 본 규정은 200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